

부산지방법원 2022. 11. 17 선고 2022가단3200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, 박환철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17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[부산 영도구 D건물, E호] 사이에 2020. 9. 1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[부산 영도구 D건물, E호]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우경아

별지

1)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에 기재된 일자로 정정하였다.